

대전지방법원 2021. 6. 2 선고 2019가합1043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

담당변호사 김광덕, 조수아, 권혁재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

변 론 종 결 2021. 5. 12.

판 결 선 고 2021. 6. 2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주식회사(이하 회사명칭 기재시 '주식회사'를 모두 생략한다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4. 24. 체결된 매매계약을 33,602,73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3,602,7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

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- 1) C은 2019. 2. 20. 원고에게 물품대금 4,400만 원을 2019. 2. 28.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(준소비대차)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(이하 ‘이 사건 공정증서’라고 한다), 위 채무를 D, E이 연대보증하였다.
- 2) C은 2019. 4. 27. 원고에게 F이 2018. 12. 18. 발행한 3,500만 원의 어음을 배서하여 주었으나, 위 어음은 2019. 4. 29. 부도처리되었다.

나.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

- 1) C은 2017. 6. 15.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은행과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0억 4,800만 원, 우선수익자 G은행, H은행, 수익자 C로 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신탁계약’이라 한다), 같은 날 G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  - 2) C은 2019. 4. 26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 날짜를 2019. 4. 24.로 기재하였다.
  - 3) C은 2019. 5. 1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

### 가. 원고

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4,400만 원 및 어음금 채권 3,500만 원 등 합계 7,9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,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,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0억 4,800만 원에서 G은행과 H은행의 대출액 9억 4,000만 원, 16억 원 등 합계 25억 4,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8,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처분하였는바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7,900만 원의 채권 중 변제된 45,397,265원을 제외한 나머지 33,602,7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33,602,7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피고
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무자력이라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## 3. 판단

가.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바,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4,400만 원의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성립된 채권임이 인정된다.

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3,500만 원의 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각 증거,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. 4. 26. 이후인 2019. 4. 27. C로부터 3,500만 원의 어음을 배서받아 2019. 4. 29. 거래처원장에 위 채권을 계상하였을 뿐이고, 달리 위 어음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,500만 원의 어음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한편,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

행사할 수 없고,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(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). 원고는 2019. 5. 14.경부터 2019. 12. 23.경까지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액 이상인 45,397,265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변제로 소멸하였고,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.

따라서 피보전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나. 설령 어음금 채권의 원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는 등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, 앞서 든 각 증거,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써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1) 회사의 채무 초과 상태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실제 부담 채무와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.

2) 원고가 C이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더라도,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. 12. 31.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, 위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1,085,287,336원, 부채는 1,151,951,304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6,663,968원을 초과한 상태이지만, 그 기준일인 2019. 12. 31.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C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처분한 이후이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권 평가액을 추가하여야 할 것인데, 원고는 위 수익권 평가액이 5억 8,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,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자산은 1,665,287,336원(= 재무제표 자산 1,085,287,336원 + 수익권 평가액 580,000,000원)이 되고, 이는 부채 1,151,951,304원을

513,336,032원 상당 상회한다.

원고가 주장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 또한 C이 2019. 1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 2,487,729,833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고, 위 손실 자체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소극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. 뿐만 아니라 위 기간의 손실은 2019. 12. 31.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의 위 자산 및 부채 항목에 이미 반영된 것인데, 위 대차대조표상 전기에 해당하는 2018. 12. 31.에는 위 2,487,729,833원의 손실이 없던 상태였을 것이므로, 2019. 12. 31.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근접한 2018. 12. 31.경 C의 적극재산은 위 2,487,729,833원의 손실까지 반영한 2019. 12. 31. 기준 대차대조표의 기재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3)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C 등으로부터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 중 상당액인 45,397,265원을 변제받기도 하였고, 남은 채권액 33,602,735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인 약 5억 8,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.

4)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고,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,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).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),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C의 수익권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C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서봉조, 판사 김가영, 판사 박지원

## 별지

## 목 록

## (토지)

1. 충청북도 충주시 I 공장용지 7274㎡
2. 충청북도 충주시 J 공장용지 1317㎡
3. 충청북도 충주시 K 공장용지 336㎡

## (건물의 표시)

충청북도 충주시 I, J, K

[도로명주소] 충청북도 충주시 L

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(판넬) 지하1층, 지상2층 공장

지1층 물탱크실(연면적제외) 35.1㎡

지1층 펌프실 8.1㎡

1층 공장 2225.56㎡

1층 창고 37.0㎡

2층 공장 763.21㎡

부속건물

1층 식당, 사무실 254.76㎡

2층 사무실, 기숙사 254.97㎡

옥탑1층

물탱크실(연면적제외) 14.03㎡

부속건물2

1층 창고 226.8㎡. 끝.